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르게 표현해주세요

- 뉴스레터 제 9 호 -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2021년, 민법 제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발견하였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신고는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